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92호 2014년 10월 6일(월)

규 칙

- 속초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4년 10월 6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1322호

속초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라목 중 “중앙행정기관의 장등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이”를 “시장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(임직원)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.
5. 학연, 지연, 종교,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
6. 최근 2년 이내에 인·허가, 계약의 체결, 정책·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

제5조제1항제7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중앙행정기관의 장등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

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14.6.30시행)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을 확대하여 청탁에 의한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사전에 예방하고, 공직사회의 연고주의 관행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